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2672 이혼 등
원 고 도AA (*****-1*****)
주소 경남
등록기준지 부산
피 고 김BB (*****-2*****)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아니한 채 폭언과 폭행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4, 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당시 대기업인 건설회사에 다녔고,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혼인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후 소규모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사업을 이유로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골프 등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간통죄로 고소되어 3개월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건축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결국 가족들이 원고 어머니 소유 부산 남산동 소재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윤CC을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였고, 2007. 4. 6.경 이 사건 부동산

산을 매수하여 2007. 5.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7. 6. 11. 윤CC 앞으로 이를 이전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근무지 변경으로 2002.경 강원도에서 지냈고, 2007.경 경주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가족이 있는 부산 남산동에 다녀갔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사업부진과 가산탕진,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어 피고가 부산에 내려오는 경우에도 서로 피하며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장녀의 결혼을 계기로 재결합하면서 원고는 윤CC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2008. 2.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금과 위 등기비용으로 500여 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상의 없이 위 남산동 빌라를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원고의 어머니를 시골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도록 하였다가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요양병원에 모셔 두었고, 피고는 2014. 8.경 퇴직하였으나 일정한 거처가 없어 현재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

자. 원고는 2015. 2. 12.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법정에서 37년의 결혼생활 동안 원고의 무수한 잘못을 용서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고 결혼한 자녀들과 손자들을 보아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산 남산동 빌라에서 가족들 함께 모여 지내길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4, 5 내지 9, 을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차수철, 도홍민의 전부 또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4, 6

호 소정의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며 가산을 탕진하고 윤CC 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